

—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기존의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의 운영에 있어,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은 새마을과에서,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자금관리 및 운영에 비 효율적임.
- 통합 운영되고 있는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를 폐지하고, 신설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 (안 제2조)
 -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
 - 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
- 가구당 융자한도 및 이율 (안 제5조)
 - 융자 한도액 : 2천만원 이하,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
 - 융자금 대부이율 : 연 3%
- 연체 이자율 조정 (안 제10조 제2항)
 -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 ⇒ 10%(정액이율)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「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」의 운영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은 새마을과에서,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자금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여 분리 관리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및 용자대상, 위원회 설치, 용자한도 및 이율, 용자금 대부신청 방법, 용자금 상한 및 상환기간 연장방법,이자 및 연체이자, 대출 및 상환금 회수 방법 등 용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변경내용으로는 안 제10조 2항의 연체 이자율을 당초 수탁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10% 정액이율로 변경하였음.